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. 8. 28 선고 2018가단104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8. 2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6. 10. 18. 접수 제246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함철환

별지